

# - 2019년 복지분야 수탁시설 - 특정감사 결과 및 처분계획(장애인복지관)

## I 개 요

- 기 간 : 2019. 10. 28.(월) ~ 10. 30.(수) [3일간]
- 감사범위 : 2015. 1. ~ 2019. 6.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반 편성 : 기획감사관 외 4명
- 감사중점내용
  -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감독부서의 시설에 대한 제도운영, 지도·감독 적정여부
  -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일반행정 업무처리 적정여부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적정여부
  - 시설 개별법령 및 자체규정 등 준수 등 운영전반

## II 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총 지적건수 : 7건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시 설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등	건	금액(원)
장애인복지관	7	6	1	-	1	123,500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처분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7건	주의(6) 시정(1)	123,500	-	
1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주의	-	-	
2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	
3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관리 소홀	주의	-	-	
4	후원물품 관리 업무 추진 소홀	주의	-	-	
5	시설사업 검사업무 소홀	주의	-	-	
6	세입예산 편성 및 이월 부적정	주의	-	-	
7	더드림 카페 운영 수익금 관리 부적정	시정	123,500	-	

# 처분요구서(1)

**【제 목】**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지적내용】**

-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시설은 이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의 사무의 관리) 및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도록 되어 있음.
-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지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징수관·재무관(관장), 지출원·물품출납원(사무국장), 수입금출납원(기획운영지원팀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9년 회계관계 직원의 관직 임명 현황(임명일 : 2019.01.02.)

구 분	직 위	담당자	비고
징수관	관장	○○○○	※ 신원보증보험 가입기간 : 2019.8.30.~ 2020.8.29. ※ 2019년 보험료 : 72,750원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원)
재무관	관장	○○○○	
지출원	사무국장	ⓂⓂⓂ	
자산출납원	사무국장	ⓂⓂⓂ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사무국장	ⓂⓂⓂ	
수입금출납원	기획운영지원팀장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사무국장	ⓂⓂⓂ	

-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평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장 포함 총 3개 직위에 보험가입금액 1억원(보험료 72,750원)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임명된 회계관직에 의한 회계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또한, 증평균장애인복지관에서는 회계관직에 지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 포함 총 15개 직위 직원에 보험가입금액 4억5천만원(보험료 329,100원)으로 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사업담당자 등이 수입금출납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기에, 수입금출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회계관직에 임명되지 않은 채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더군다나 회계관직 지정을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모든 직원을 회계책임관으로 두어 신원보증에 가입하고 수입금출납 업무를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에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관직이 아닌 담당자들이 수입금출납 업무를 하고 있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회계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련법령을 숙지하시어 회계관직지정에 따른 신원보증보험 및 수입금출납업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처분요구서(2)

**【제 목】**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지적내용】**

- 증평복지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시설은 이 규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제28조(지출의 원칙)에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 증평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위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9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 그중 2019년 보조금사업비에서 추진되는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사업 외 14개의 사업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담당자가 지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기능향상팀에서 추진하는 ‘문화 예술교육사업 연극교실’ 사업은 지출과목이 예산편성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지출을 하고 있으며, 내부 품의 과정에서는 상이한 지출과목을 (세출과목을 세입과목과 병행하여 기재하는 등) 사용하였고, 지출결의서 결재란에는 회계업무 처리자가 아닌 사업담당자·사업팀장의 도장을 찍는 등 맞지 않는 회계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 이는 지정된 회계담당자가 아닌 사업담당자가 본인의 사업에 대한 지출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회계담당자에게 거쳐야할 지출 서류 증빙자료의 검토·확인, 회계관계의 적법여부 심사 등 절차 없이 업무처리가 되어, 재무 회계 규정 위반 및 정상적인 지출 업무가 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예산을 편성하여 군에 제출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지출 시에는 이 편성된 과목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지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과목(세부과목)을 생성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러므로 예산서와 지출시스템과 과목이 맞지 않고, 결산내용과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련법령의 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시고 예산편성과 지출 등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처분요구서(3)

**【제 목】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관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V.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6. 후원금의 관리에 따라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후원금 유형에 따라 지정, 비지정으로 구분하여 별도 장부로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후원금을 유형에 따라 지정, 비지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을 확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금 유형에 따라 후원금 발급목록 장부를 작성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처분요구서(4)

**【제 목】** 후원물품 관리 업무 추진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41조의2(후원금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8년 비지정 후원금으로 받은 1,72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관내 재가 장애인에게 배부하면서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취급 관리 업무를 소홀이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 후원물품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후원물품 배부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처분요구서(5)

**【제 목】** 시설사업 검사업무 소홀

**【현 황】**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사업현황

○ 사 업 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및 △△공사

○ 사업기간 : 2019. 04. 02. ~ 04. 08.

○ 사 업 비 : 금4,290천원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 외부세척 및 도색공사 1식

○ 도 급 자 : (주)■■■ 대표 ■■■■

○ 공 정 율 : 100%

**【지적내용】**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한 ■■■■■ 및 △△공사에 대하여 2019. 04. 08.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신고서(사업완료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sup>1)</sup>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향후 계약과 관련한 시설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 전 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처분요구서(6)

**【제 목】** 세입예산 편성 및 이월 부적정

**【현 황】**

○ 보조금수입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사업명	세입금액	편성항목	기타보조금 편성 사유
2016	일감지원센터	58,200	03-31-314 기타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건강증진사업	10,000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30,000		
2017	일감지원센터	58,200	03-31-314 기타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건강증진사업	10,000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30,000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	30,000		
2018	일감지원센터	58,200	03-31-314 기타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건강증진사업	10,000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30,000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	30,000		
2019	일감지원센터	58,200	03-31-314 기타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건강증진사업	10,000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25,000		
	여성장애인평생교육지원	30,000		

○ 이월금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이월금액	사업비 이월항목	이월항목	사유
2016	151,319	○ 활동지원 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 더드림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2017	168,978	○ 일감부업 ○ 더드림 ○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2018	246,897	○ 일감부업 ○ 더드림 ○ 장애인활동지원 ○ 정부지원 발달 재활 ○ 본인부담 발달재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언어발달지원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2019	420,342	○ 일감부업 ○ 더드림 ○ 장애인활동지원 ○ 정부지원 발달 재활 ○ 본인부담 발달재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언어발달지원	07-71-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 중평군 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제출자료 재구성

【지적내용】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6년~2019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과목을 편성함에 있어 위 보조금수입 현황과 같이 각 사업들은 도·군에서 받은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 성격의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시·도 보조금 및 시·군·구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음.

#### <세입예산 이월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3항제1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5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6년~2019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과목을 편성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정부지원 발달 재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로 판단하여 전년도이월금<sup>2)</sup>으로 세입항목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이월금은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5 07-71-711 전년도이월금(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00이월사업비<sup>3)</sup>의 세입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이월금과 사업비에 대한 이월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이 하여 부적절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

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5 07-71-713 00이월사업비(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00사업의 이월된 금액)

# 처분요구서(7)

**【제 목】** 더드림 카페 운영 수익금 관리 부적정

**【현 황】**

○ <표 1> 더드림 CAFE 수익금 관련 현황

구 분	4)총판매금액(a)	실 매출액(b)	수납액(c)	차액(b-c)	비 고
2019. 1월	370,200	328,500	328,500	-	단위 : 원
2019. 2월	433,100	366,800	366,800	-	
2019. 3월	462,100	465,600	465,600	-	
2019. 4월	1,783,700	521,300	470,300	51,000	
2019. 5월	666,600	594,800	594,800	-	
2019. 6월	579,500	477,500	550,000	▲72,500	

○ 수납지체 현황 : 총 30건 (2019. 1. 1. ~ 2019. 6. 30.)

**【지적내용】**

- 중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더드림 cafe 운영을 통하여 일일 발생하는 커피 및 음료 판매수익금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수납하여야 하나,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납원(회계담당자)은 더드림 cafe 담당자로부터 판매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2~3일간 보관하였다가 일괄 수납한 사실이 수차례 있음.
- 또한, 당일 발생한 판매수익금을 매일 정산 및 보고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정확한 금액을 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드림 cafe 담당자는 일일 정산내역 보고를 누락하고, 관장의 내부결재를 받고 있는 월별

4) 출처 : 2019년 더드림 카페 판매 및 재고현황표

판매내역 정산 또한 소홀히 하였으며, 회계담당자 역시 일일 정산내역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납처리하였음.

- 그 결과, <표1>과 같이 2019년 4월에는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수익금이 수납되었고, 2019년 6월에는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수익금을 수납하였으며, 매월 관장의 내부결재를 받고 있는 월별 판매현황표의 총 판매금액(a)과 실 매출액(b), 수납액(c)이 모두 불일치하는데도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객관적인 회계자료 및 증명서류에 의해 처리하여야 할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

###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 판매수익금 발생시 일일정산 보고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한 판매수익금을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관계 서류 작성 및 점검 철저 등 수익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잘못 세입처리한 수익금에 대하여 즉시 회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